

의안번호	2218678
의 퇴 인	김성원 의원
회 답 일	2026. 6. 5.
추계번호	26A2425
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제2항제6호(육성계획의 수립)	-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)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6. <u>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</u>	의무규정
2	안 제11조의2 신설(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등)	- 시·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제10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주력산업을 선정할 수 있음. 선정된 지역주력산업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음(제1항) -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¹⁾에 따라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3	안 제11조의3 신설(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등)	- 시장·군수·구청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행정시장과 「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도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)은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음(제1항) 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지역의 특산자원 또는 특화된 기술 등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- 제1항에 따른 과제의 발굴,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재량규정
4	안 제11조의4 신설(지역특화프로젝트 발굴·지원 등)	-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지역중소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발굴·제안하는 과제에 대해 제11조제1항¹⁾의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- 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 프로젝트의 발굴, 지원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재량규정
5	안 제29조(향토기업의 지원 등)	정부는 지역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(이하 “향토기업”이라 한다)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「신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용보증기금법」에 따른 신용보증기금, 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·운용하도록 할 수 있음(제1항) － 2. 상시 근로자 수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2)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할 것 ○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향토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, 사업화 추진, 국내외 판로확보, 인력양성 및 보증제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향토기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
6	안 제32조의2 신설(시도별 전담기관의 설립 등)	○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시·도별로 전담기관(이하 “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－ 1. 지역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전략 수립 － 2. 지역 산업체,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성장 지원 － 3. 지역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－ 4.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지원 － 5.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－ 6. 지역중소기업 인재 양성·공급 지원 － 7. 지역중소기업 자료 수집, 데이터 분석 및 조사 연구 － 8. 지역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조사·분석·평가 및 과제발굴·기획 － 9.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－ 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○ 시·도별로 설립된 전담기관의 명칭은 전담기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“테크노파크”를 붙여 사용하며, 이 경우 테크노파크가 아닌 자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. 다만,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음(제3항) 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음(제6항)	재량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6조제2항제6호(육성계획의 수립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1조의2 신설(지역주력산업의 선정 등)	
3	안 제11조의3 신설(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등)	
4	안 제11조의4 신설(지역특화프로젝트 발굴·지원 등)	
5	안 제29조(향토기업의 지원 등)	
6	안 제32조의2 신설(시도별 전담기관의 설립 등)	

- 1)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)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1.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
 2.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
 3.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
 4.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
 5.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
 6.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
 7.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
 8.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2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 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시·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)의 수립 시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,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 - 아울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·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및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향토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향토기업에 대하여 연구 개발, 사업화 추진, 보증제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
 - 또한, 개정안은 시·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
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,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,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, 향토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전담기관의 설립·운영과 관련된 기존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되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 - 개정안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개정안 관련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재정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 (회계, 코드)	내용	2026년 제1회추경예산
지역특화산업육성 (지특, 3336-302)	(지역주력산업육성) 지역주력산업 분야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진입 및 사업화를 위한 기업 성장 서비스(기술지도, 특허·인증, 마케팅, 디자인, 컨설팅 등) 지원	40,594
지역특화산업육성(제주) (지특, 3336-302)		3,383
지역특화산업육성(세종) (지특, 3336-302)		1,697
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&D (지특, 3336-341)		96,939

세부사업 (회계, 코드)	내용	2026년 제1회추경예산
지역특화산업육성 (지특, 3336-302)	(시군구연고산업육성) 인구감소·관심지역, 농어촌지 역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시군구 단위 지자체 소 재의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	33,600
지역특화산업육성(제주) (지특, 3336-302)		795
지역특화산업육성(세종) (지특, 3336-302)		500
지역특화산업육성 (지특, 3336-302)	(산업기술단지거점기능강화) 지역혁신기관(테크노파 크)의 역량강화 및 기업지원 효율성 제고	10,487
지역특화산업육성(제주)- (지특, 3336-302)		435
지역특화산업육성(세종) (지특, 3336-302)		399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추진될 지역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,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, 지역특화 프로젝트 사업, 향토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전담기관의 설립·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려면 법률상 육성계획 규정에 지역주력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예산의 규모가 증액될 것이라는 전제하에, 확대 또는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내용을 가정할 수 있어야 함
 - 그러나 현시점에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며, 지출 규모는 정부의 재정 여건 및 재정 추가 투입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에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손희정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손희정	02-6788-3750	hjson87@assembly.go.kr